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3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4. 4.

남현주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남현주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의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정의 성장 및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38
----------	----------

발의연월일 : 2024. 4. 5.

발의자 : 남현주, 이영빈, 손범구,  
서민우, 권숙자, 정창근,  
고명욱, 임미연, 박정환,

## 1.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6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7조~8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민의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 프로그램 개발 · 운영

3. 교육 및 취업지원

4. 정보체계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재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 련 법령 】

###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 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